

◇◇ 학교 학생간 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원명	서울고등법원
사건번호	2015나 ○○○○○○	사건유형	손해배상
원고	○○○ 외 1	피고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외 11
판결선고일	2015. 12. 22.	비고	
사건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피고 학생들에게 2010. 4. 2.부터 2010. 7. 20. 경까지 원고 ○○○는 집단으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2010. 8.25. ◇◇학교를 자퇴하고 이후에도 대인관계에 두려움을 느끼며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심리적인 고통을 겪다가 2012. 6.28. 상세불명의 우울병에 피소드 진단을 받는 등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. - 원고 ○○○는 피고 담임교사의 보호,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있고, 인천시교육감은 피고 담임교사의 공무수행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 제기. 		
주 문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6.1.31.까지 원고 는 원고 ○○○에게 1억5천만 원을, 원고 □□□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하되 위 지급기한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원 전부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. 2.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. 3.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 		
청구취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피고들은 각자 원고 ○○○에게 309,507,446원, 원고 □□□에게 10,0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 		
판결이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고 ○○○는 피고 학생들의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◇◇학교를 자퇴하였는바, 피고 학생들의 집단 괴롭힘이 원고 ○○○에게 더 이상 학업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음이 명백한 점, 피고 학생들의 집단 괴롭힘 이전에 원고 ○○○에게 특별히 정신병적 증상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, 원고 ○○○의 가족 역시 특별히 정신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 원고 ○○○의 조현병이 유전적인 증상이라고 보기 		

어려운 점, 피고 학생들의 이 사건 집단 괴롭힘 이외에는 원고 ○○○에게 조현병을 유발할 만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, 피고 학생들의 집단 괴롭힘과 원고 ○○○의 조현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, 당시 15세 남짓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로서 책임능력이 있었던 피고 학생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.

- 피고 부모들은 보호·감독 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고 학생들의 이 사건 집단 괴롭힘 행위를 방치하였으므로, 피고 부모들의 감독의무위반과 원고들의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부모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.
-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분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거나, 또는 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에 대하여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를 대신하여 학생들을 보호·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서 배상하여야 함.